

2. 과테말라(Guatemala)

◎ 주요 변동사항

| 구 분 | 2017 | 2019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적용대상 | 근로자 | 근로자 | 자영자 : 적용제외 |
| 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 | 5.5% (1.83% / 3.67%) | 5.5% (1.83% / 3.67%) | - |
| 노령연금 수급요건 | 가입기간 240개월, 60세 | 가입기간 240개월, 60세 | - |
| 노령연금 지급률(40년) | 80% | 80% | - |
| 일시금 | 총 납부 보험료의 70% | 총 납부 보험료의 70% | 월 최대 기준소득의 3배까지 지급 |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69년(사회보험, 1977년 전국 시행), 2005년(사회연금)
- **현행법** : 2003년(사회보험), 2005년(사회연금)

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 및 사회부조**

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- 당연적용 :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 근로자,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화물 또는 운송회사 근로자, 특별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공공부문 근로자
 - 임의적용 : 퇴직 후 3개월까지 제도에 가입하고 최종 36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의 납부 기간이 있는 자
 - 적용제외 : 자영자
 - 특별제도 : 군인 및 대다수 공공부문 근로자
- **사회부조** : 과테말라 거주 빈곤계층

○ 가입자

- 사회보험
 - 월 가입소득의 1.83%
 - 임의 가입자는 당연적용 대상 일 때의 마지막 달에 신고한 소득의 5.5%를 부담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은 일급 최저임금임
 - 일급 최저임금은 82.46quetzales(수출 및 값싼 노동력 이용 산업)부터 90.16 quetzales(다른 분야)까지 다양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없음
- 사회부조
 - 연간 순소득이 25,000quetzales 이하인 경우 없음; 연간 순소득이 25,000quetzales 초과인 경우 소득에 따라 연 고정금액 부담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: 비대상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- 월 임금총액의 3.67%
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하한 소득은 일급 최저임금
 - 일급 최저임금은 82.46quetzales(수출 및 값싼 노동력 이용 산업)부터 90.16quetzales(다른 분야)까지 다양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 없음
- 사회부조
 - 연간 순소득이 25,000quetzales 이하인 경우 없음; 개인별로 연간 순소득이 25,000quetzales 초과이거나 합법적 독립체의 순소득이 100,000quetzals 초과인 경우 소득에 따라 연 고정금액 부담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납부된 총 보험료의 25%,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- 사회부조 : 필요 시 총당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24개월 이상인 60세 도달자
 - 피부양자수당 : 배우자 또는 동거인, 18세 미만 자녀(장애 시 연령 제한없음),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 부친
 - 해외 지급 불가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60세 도달자
 - 근로는 중단되어야 함
 - 해외 지급 불가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재산조사)
 - 극심한 빈곤상태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어떤 연금도 받지 않는 65세 실직자에게 지급
 - 재산조사 : 개인 소득 및 자산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 - 해외 지급 불가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장애 발생 전 6년 간 3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완전장애(소득능력 33%이상 상실)로 판정된 경우 지급
 - 장애정도는 연 단위 측정
 - 피부양자수당 : 배우자 또는 동거인, 18세 미만 자녀(장애 시 연령제한 없음),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피부양모,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피부양부
 - 상시간병수당 : 중증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급
 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중지되고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- 해외지급 불가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 당시 노령연금 수급자였거나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, 또는 최종 6년 중 3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
 - 수급 가능 유족 : 미망인, 근로능력 없는 홀아비; 18세 미만 자녀(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없음); 피부양 모친, 근로능력 없는 부친
 - 유족배우자 연금은 재혼 시 중지됨
 - 해외지급 불가
- 장제비(사회보험)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유족연금을 받았던 경우 지급
- 산재로 장제비를 받았을 경우 중복불가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최종 60개월 간 가입자 평균소득의 50%에 120개월을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 6개월당 0.5%씩 가산하여 지급
 - 피부양자수당 : 각 부양가족당 노령연금액의 10% 지급
 - 급여 산정 시 사용되는 최대 월 소득 : 9,000quetzales
 - 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연금액 : 340 quetzales
 - 수당을 포함한 월 최대연금액 : 7,200 quetzales(급여 산정시 사용된 최대 월 소득의 80%)
 - 1년에 13회 지급 및 7월 보너스(300quetzales) 12월 보너스(500 quetzales) 추가 지급
 - 급여조정 : 재정 추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
 - 총 보험료 납부액의 70%가 지급되며 급여 산정 시 사용된 최대 월 소득 3배까지 지급
 - 급여 산정 시 사용되는 최대 월 소득은 9,000quetzales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월 400quetzales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최종 60개월간의 가입자 평균소득의 50%에 120개월을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 6개월당 0.5% 가산하여 지급
 - 피부양수당 : 장애연금액의 10% 지급
 - 상시간병수당 : 연금액의 25%
 - 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연금액 : 340 quetzales
 - 수당을 포함한 월 최대연금액 : 7,200 quetzales(급여 산정시 사용된 최대 월 소득의 80%)
 - 1년에 13회 지급 및 7월 보너스(300quetzales) 12월 보너스(500 quetzales) 추가 지급
 - 급여 조정 : 재정 추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연금
 -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를 미망인 또는 장애가 있는 홀아비에게 지급
 - 월 최저연금액 : 170 quetzales

- 고아연금
 - 사망자 연금액의 25%가 지급되며 완전고아인 경우 각각 50% 지급
 - 월 최저연금액 : 85 quetzales, 170 quetzales(완전고아)
- 피부양연금
 - 피부양 부모 각각에게 사망자 연금액의 25% 지급
 - 최저 연금액 : 85 quetzales
- 7월 및 12월 보너스는 수급 자격 있는 유족 간 분할; 미망인이 2/3를 받고 1/3은 다른 유족 간 균분 지급
- ※ 합산된 모든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월 최저연금액의 합산액은 340 quetzales 임
- ※ 1년에 13회 지급 및 7월 보너스(300 quetzales)와 12월 보너스(500 quetzales) 추가 지급
- 장제비 : 장례비용을 부담한 가족에게 1,237.50 quetzales를 일시금으로 지급;
 - 재정 추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

7 관리운영기관

- 노동사회복지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)
 - <http://www.mintrabajo.gob.gt>
 - 전반적인 감독 및 사회부조제도 운영
- 사회보장공단(Social Security Institute)
 - <http://www.igssgt.org>
 - 사회보험제도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